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0340호, 24. 2. 20. 공포, 24. 8.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제고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①·② (생략)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③ ----- ----- ----- <u>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u>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 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u>한국교통안전공단에</u> 위탁한다.	⑤ ----- ----- ----- ----- ----- ----- ----- <u>「한국교통안전공단법」</u> <u>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u>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4871